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97호 2020. 3. 2(월)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3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7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8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4

###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 22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4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5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3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65명”을 “1,19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44명”을 “1,17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1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 2와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별표 2】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5% 이내	33.5% 이내	29% 이내	5% 이상

\*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3%이내	97%이상

##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	-	34% 이내	33% 이상	33% 이상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 별표 3】

<b>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b>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1,19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190	-				
2급	1	1				
4급	7	5	1	1		
5급	70	38	2	7	1	22
6급 이하 계	1,112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별정직 계	3	-				
6급 상당 이하 계	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38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24호 및 제1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125.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건강생활지원과”를 “치매돌봄과, 건강생활지원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영양개선사항”을 “영양 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정신보건”을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보건의료사업”을 “보건 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을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으로 한다.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4.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8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등	비고 (행정복지)
		총 계	1,195	763	20	89	39	284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1190	758	20	89	39	284	(9)
2급 소계		1	1					
이 사 관		1	1					
4급 소계		7	5	1	1			
서 기 관		2	1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 기관·기술서기관		3	3					
5급 소계		70	38	2	7	1	22	
행 정		14	12	2				
의 무		2			2			
운 전		1	1					
행 정·사회복지		4	4					
행 정·공업		2	2					
행 정·녹지		1					1	
행 정·보건		1	1					
행 정·환경		2	2					
행 정·시설		10	10					
행 정·사회복지·공업		2					2	
행 정·사회복지·농업		1					1	
행 정·사회복지·녹지		3					3	
행 정·사회복지·보건		3					3	
행 정·사회복지·환경		2					2	
행 정·사회복지·시설		4					4	
행 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 · 공업 · 농업	3	1				2	
행정 · 공업 · 시설	1	1					
행정 · 녹지 · 시설	2	1				1	
행정 · 보건 · 환경	2	1				1	
행정 · 보건 · 시설	1					1	
행정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1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3			3			
<b>6급 소계</b>	<b>286</b>	<b>199</b>	<b>8</b>	<b>22</b>	<b>11</b>	<b>46</b>	
행정	88	71	4	1	1	11	
세무	16	14			2		
전산	1						
사회복지	14	14					
속기	2		2				
공업	7	7					
농업	1	1					
녹지	6	5			1		
수의	1	1					
보건	5	4		1			
의료기술	2			2			
간호	1			1			
환경	6	6					
시설	22	20			2		
방송통신	2	2					
운전	5	2	1		1	1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 무 운 영	2	1			1		
행 정 · 세 무	13	9				4	
행 정 · 사 회 복 지	34	10	1			23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농 업	1				1		
행 정 · 녹 지	2	1				1	
행 정 · 보 건	5	2			1	2	
행 정 · 환 경	6	4				2	
행 정 · 시 설	10	10					
행 정 · 방 송 통 신	2	1				1	
사 회 복 지 · 간 호	1			1			
공 업 · 환 경	1	1					
녹 지 · 시 설	1	1					
보 건 · 간 호	1			1			
보 건 · 환 경	1						
식 품 위 생 · 간 호	1			1			
의 료 기 술 · 간 호	3			3			
환 경 · 시 설	1	1					
시 설 · 방 재 안 전	1	1					
행 정 · 세 무 · 농 업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2			2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환 경 · 시 설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7			7			
식 품 위 생 · 의 료 기 술 · 간 호	1			1			
행 정 · 녹 지 · 환 경 · 시 설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 약 무 · 간 호	1			1			
7급 소계	353	239	4	19	13	78	(1)
행 정	137	86	4		2	45	(1)

세	무	18	18					
전	산	5	5					
사	회 복 지	40	25				15	
공	업	10	8			2		
농	업	2	1			1		
녹	지	8	7			1		
수	의	1	1					
해	양 수 산	1	1					
보	건	17	11		5	1		
의	료 기 술	4			4			
간	호	4			4			
환	경	13	13					
시	설	53	48			5		
방	재 안 전	1	1					
방	송 통 신	2	2					
운	전	15	1		1		13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4	1				3	
행	정 · 세 무	3	2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2				2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3	3					
농	업 · 수 의	1	1					
보	건 · 간 호	1			1			
식	품 위 생 · 의 료 기 술	2			2			
보	건 · 의 료 기 술 · 간 호	2			2			
8급 소계		291	170	4	34	9	74	(5)
행	정	117	71	3	2		41	(5)
세	무	9	9					
전	산	2	2					

사	회	복	지	48	19		2		27	
공		업		7	7					
농		업		1	1					
녹		지		6	5			1		
보		건		7	3		2	2		
의	료	기	술	1			1			
간		호		19			19			
환		경		13	13					
시		설		28	23			5		
방	송	통	신	3	3					
운		전		6		1	1		4	
전	화	상	담	1	1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1					
행	정	·	전	1						
행	정	·	사	7	6				1	
행	정	·	농	1					1	
행	정	·	간	1			1			
행	정	·	시	3	3					
공	업	·	보	1	1					
공	업	·	환	1				1		
보	건	·	간	1			1			
식	품	위	생	1			1			
보	건	·	식	3			3			
보	건	·	의	1			1			
9급 소계				182	106	1	6	5	64	(3)
행		정		78	39	1	3	2	33	(3)
세		무		9	8			1		
사	회	복	지	35	5		1		29	
공		업		8	8					

농	업	1	1					
녹	지	5	3			2		
보	건	1			1			
의	료 기 술	1			1			
환	경	12	12					
시	설	19	19					
방	재 안 전	2	2					
방	송 통 신	2	2					
운	전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4	4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2	2					
연 구 직 계		1	1					
기 록 연 구 사		1	1					
별 정 직 계		3	3					
7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8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9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84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건강생활지원과장”을 “치매돌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생활지원과장”으로, “보한다”를 “보하며, 이 중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장을, 치매돌봄과장은 부센터장을 겸한다”로 한다.

별표 1,2,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총무과	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건강보험 업무
	4.	방위협의회 운영
	5.	직장복지금고 및 구내식당 운영
	6.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7.	행정공제회 관리
	8.	청사경비 및 방호관리
	9.	직장민방위 및 자체예비군 운영 관리
	10.	의식행사 의전 및 접대에 관한 사항
	11.	민간에 대한 포상 및 표창
	12.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3.	회의실 운영 관리
	14.	구기동에 관한 사무
	15.	공무원 복무 및 휴가
	16.	직원월례조회 및 시무식·종무식
	17.	청내 사무실 조정
	18.	공무원 인사(구소속공무원 임용권)
	19.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20.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 평정
	21.	공무원 신원조사 의뢰
	22.	공무원증 발급
	23.	소·동 행정지도 감독,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지도
	24.	동의 명칭, 위치, 구역의 변경(행정구역 조정)
	25.	시책업무 추진
	26.	공무원 교육
	27.	공무직근로자 관리
	28.	반상회 운영

	29.	통·반조직 운영
	30.	여론 및 동향관리
	31.	공무원 표창
	32.	공무원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33.	적십자회비 모금
	34.	단체관리(바르게살기운동)
	3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무
	36.	공무원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37.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38.	행정사 사무 업무
	39.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발급
	40.	선거 및 국민투표
	41.	사무편람 제작 및 지도·점검
	42.	사회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조정
	43.	새마을 단체 및 지도자 관리
	44.	새마을 정신계도 홍보 및 교육
	45.	새마을 장학금 운영
	46.	도시새마을운동 추진
	47.	새마을 시설물 관리·지도
	48.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49.	국민운동 관련 시책 추진
	50.	민간단체보조에 따른 보조금 관리
	51.	해병전우회 관한 사항
	52.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53.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54.	공무직 노조 지원업무
	55.	그 밖의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56.	국내거소자 거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사항
	57.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58.	공무원 호봉 및 근무년수 관리

	59.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60.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지원
	61.	동청사 건립 종합계획 수립
	62.	동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63.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관리
	64.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5.	동계획형 주민참여예산
	66.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및 활동 지원
	67.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b>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b>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회적경제	1.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
일자리과	2.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
	3.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5.	고용복지+센터 운영
	6.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	공공근로사업 추진
	8.	기타 일자리관련 민원처리 상담
	9.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 추진
	10.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생산품 또는 서비스 우선구매 장려
	11.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1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13.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추진
	14.	생활임금액 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16.	일자리창출 및 지원시책 발굴 추진
	17.	일자리사업관련 전산망 운영 관리
	18.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19.	50플러스일자리에 관한 사무
	20.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

[별표 2]

<b>지역보건과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b>	
<b>부서명</b>	<b>분장사무</b>
지 역 보 건 과	1. 서무, 보안, 복무,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 운영 및 회계·지출 관리
	3. 차량관리
	4. 물품 및 문서, 기록물 관리
	5.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6. 일반(양방) 및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
	7.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9.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암 관리 및 암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2. 노인 안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13.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취약계층 일반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
	15.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6. 노인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7.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18. 기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9. 각종 보건통계

## 치매돌봄과 사무분장표(제9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치 매 돌 봄 과	1. 사무, 보안, 복무,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 운영 및 회계·지출 관리
	3. 차량관리
	4. 물품 및 문서, 기록물 관리
	5. 노인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8.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10.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11. 쉼터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12. 치매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치매 인식개선·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14. 치매안심돌봄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치매가족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타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7. 각종 보건통계

[별표 4]

[별표 4]	
<b>동 사무분장표(제13조 관련)</b>	
부서명	분 장 사 무
동	1. 인사, 복무, 보안,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직 및 비상근무
	3. 통·반 구역 확정, 통·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자생단체 등 각종 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증명 신고 사실확인 및 증명의 경유에 관한 사항
	10. 동재산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신·증축, 대수전을 제외한 동 주민센터 청사 시설물 정비 관리
	12. 각종 행사 참가, 간행물 배부에 관한 사항
	13. 법령 기타 공지사항의 공지 및 주민 여론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4. 취학아동 사무
	15.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보호에 관한 사항
	16.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7. 어디서나 민원에 관한 사항
	18.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
	19.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2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가. 연간방문계획 수립 및 방문상담·차량 관리
	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다.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서비스 연계
	라. 통합적인 종합상담 수행
	마. 방문간호 및 건강서비스 제공
	바. 민관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사.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1.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 및 지시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5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b>합</b>		<b>계</b>	<b>1,195</b>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1,190	
		2급	1	행정 1
		4급	7	행정 2, 기술 2, 행정·기술 3
		5급	70	행정 14, 의무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4,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0,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3, 행정·사회복지·보건 3,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3, 행정·공업·시설 1, 행정·녹지·시설 2, 행정·보건·환경 2, 행정·보건·시설 1, 행정·환경·시설 1, <b>보건·의료기술·간호 1</b> ,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6급	286	행정 88, 세무 16, 전산 1, 사회복지 14, 속기 2, 공업 7, 농업 1, 녹지 6, 수의 1, 보건 5, 의료기술 2, 간호 1, 환경 6, <b>시설 22</b> , 방송통신 2, <b>운전 5</b> , <b>전화상담운영 1</b> , 기계운영 1, <b>사무운영 2</b> , <b>행정·세무 13</b> , <b>행정·사회복지 34</b> , 행정·공업 2, 행정·농업 1, 행정·녹지 2, 행정·보건 5, 행정·환경 6, 행정·시설 10, 행정·방송통신 2, 사회복지·간호 1,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간호 1, 보건·환경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3,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세무·농업 1, 행정·공업·시설 2, <b>행정·보건·간호 2</b> ,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간호 7,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353	행정 137, 세무 18, 전산 5, <b>사회복지 40</b> , 공업 10, 농업 2, 녹지 8, 수의 1, 해양수산 1, 보건 17, 의료기술 4, 간호 4, 환경 13, <b>시설 53</b> ,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b>운전 15</b> , <b>기계운영 1</b> , <b>사무운영 4</b> ,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b>행정·환경 1</b> , <b>행정·시설 3</b> , 농업·수의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8급	291	행정 117, 세무 9, 전산 2, <b>사회복지 48</b> , 공업 7, 농업 1, 녹지 6, 보건 7, 의료기술 1, 간호 19, 환경 13, 시설 28, 방송통신 3, 운전 6,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7, 행정·농업 1, 행정·간호 1, 행정·시설 3,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9급	182	행정 78, 세무 9, 사회복지 35, 공업 8, 농업 1, 녹지 5, 보건 1, 의료기술 1, 환경 12, 시설 19, 방재안전 2, 방송통신 2, 운전 2,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별정직	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1	일반비서 1
		9급	1	일반비서 1
	연구직	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구 분 청	계		763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758	
		2급	1	행정 1
		4급	5	행정 1, 기술 1, 행정·기술 3
		5급	38	행정 1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4, 행정·공업 2,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0, 행정·공업·농업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6급	199	행정 71, 세무 14, 전산 1, 사회복지 14, 공업 7, 농업 1, 녹지 5, 수의 1, 보건 4, 환경 6, 시설 20, 방송통신 2, 운전 2,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9, 행정·사회복지 10,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4, 행정·시설 10, 행정·방송통신 1,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환경 1,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7급	239	행정 86, 세무 18, 전산 5, 사회복지 25, 공업 8, 농업 1, 녹지 7, 수의 1, 해양수산 1, 보건 11, 환경 13, 시설 48,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운전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2, 행정·사회복지 2, 행정·환경 1, 행정·시설 3, 농업·수의 1
		8급	170	행정 71, 세무 9, 전산 2, 사회복지 19, 공업 7, 농업 1, 녹지 5, 보건 3, 환경 13, 시설 23, 방송통신 3, 전화상담운영 1, 기계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6, 행정·시설 3, 공업·보건 1
		9급	106	행정 39, 세무 8, 사회복지 5, 공업 8, 농업 1, 녹지 3, 환경 12, 시설 19, 방재안전 2, 방송통신 2,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별정직	소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1	일반비서 1
	9급		1	일반비서 1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의회사무국	일반직	소계	20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8	행정 4, 속기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4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4	행정 3, 운전 1
		9급	1	행정 1
보 건 소	일반직	소계	89	
		4급	1	기술 1
		5급	7	의무 2, 행정·보건·의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6급	22	행정 1, 보건 1, 의료기술 2, 간호 1, 사회복지·간호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3,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7,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19	보건 5, 의료기술 4, 간호 4, 운전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8급	34	행정 2, 사회복지 2, 보건 2, 의료기술 1, 간호 19, 운전 1, 행정·간호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1
		9급	6	행정 3, 사회복지 1, 보건 1, 의료기술 1,
출 장 소	일반직	계	39	
		5급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6급	11	행정 1, 세무 2, 녹지 1, 시설 2,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농업 1, 행정·보건 1, 행정·공업·시설 1
		7급	13	행정 2, 공업 2, 농업 1, 녹지 1, 보건 1, 시설 5, 행정·세무 1
		8급	9	녹지 1, 보건 2, 시설 5, 공업·환경 1
		9급	5	행정 2, 세무 1, 녹지 2
동	일반직	계	284	
		5급	22	행정·녹지 1,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3, 행정·사회복지·보건 3,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보건·시설 1
		6급	46	행정 11, 운전 1, 행정·세무 4, 행정·사회복지 23,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2, 행정·방송통신 1, 행정·세무·농업 1
		7급	78	행정 45(행정복지 1), 사회복지 15, 운전 13, 사무운영 3, 행정·사회복지 2
		8급	74	행정 41(행정복지 5), 사회복지 27, 운전 4, 행정·사회복지 1, 행정·농업 1
9급	64	행정 33(행정복지 3), 사회복지 29, 운전 2		

## [별표 2]

##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763	
미 래 기 획 단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시설 1(개방형)
		6급	3	행정 1, 시설 2
		7급	3	행정 1, 환경 1, 시설 1
		8급	1	행정·시설 1
		9급	2	시설 2
기 획 예 산 실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 1
		6급	9	행정 5, 세무 1, 방송통신 2, 전화상담운영 1
		7급	11	행정 10, 방송통신 1
		8급	3	행정 1,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9급	3	행정 1, 방송통신 2
감 사 실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개방형) 1
		6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7급	6	행정 4, 시설 2
소 통 협 력 담 당 관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시설 1(개방형)
		6급	3	행정 3
		7급	4	행정 1, 전산 1, 사회복지 1, 시설 1
		8급	2	전산 1, 행정·전산 1
		9급	1	행정 1
총 무 과		계	37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33	
		2급	1	행정 1
		4급	1	행정 1
		5급	3	행정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6급	9	행정 9
		7급	10	행정 9, 행정·시설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급 별 내역
		8급	7	행정 7
		9급	2	행정 2
	별정직	소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1	일반비서 1
		9급	1	일반비서 1
홍보정책과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 1
		6급	2	행정 1, 전산 1
		7급	6	행정 2, 전산 4
		8급	3	행정 2, 전산 1
재무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3, 운전 1, 시설 1, 기계운영 1
		7급	8	행정 5, 시설 2, 운전 1
		8급	5	행정 4, 공업 1
		9급	1	행정 1
세무1과	일반직	소계	29	
		5급	1	행정 1
		6급	10	세무 6, 행정·세무 4
		7급	10	세무 9, 행정·세무 1
		8급	4	행정 1, 세무 3
		9급	4	행정 2, 세무 2
세무2과	일반직	소계	31	
		5급	1	행정 1
		6급	9	세무 6, 행정·세무 3
		7급	9	세무 8, 행정·세무 1
		8급	5	세무 5
		9급	7	세무 6, 행정 1
민원봉사과		계	23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3	행정 3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8	행정 7, 사무운영 1
		9급	5	행정 5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토지 정보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시설 4, 행정·시설 1
		7급	13	행정 2, 시설 10, 행정·시설 1
		8급	5	행정 3, 시설 2
		9급	1	시설 1
복지 정책과	일반직	소계	37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7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3
		7급	12	행정 3, 사회복지 8, 행정·사회복지 1
		8급	12	행정 1, 사회복지 9, 행정·사회복지 2
		9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노인 복지과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4	행정 1, 사회복지 1, 행정·사회복지 2
		7급	6	행정 1,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1
		8급	3	사회복지 3
		9급	1	행정 1
장애인 복지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사회복지 3, 행정·사회복지 2
		7급	6	사회복지 6
		8급	3	사회복지 3
		9급	5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3
교육 혁신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7	행정 6, 사회복지 1
		8급	3	행정 3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급 별 내역
		9급	4	행정 4
가 정보육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6	행정 2, 사회복지 4
		7급	7	행정 3, 사회복지 4
		8급	8	행정 3,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아 동 행 복 과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1, 사회복지 1, 행정·사회복지 2
		7급	3	행정 2, 보건 1
		8급	5	행정 2, 행정·사회복지 3
		9급	3	행정 2, 행정·사회복지 1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5	행정 4, 행정·시설 1
		8급	6	행정 6
클 린 도 시 과	일반직	소계	23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환경 1
		6급	5	환경 3, 행정·환경 1, 공업·환경 1
		7급	3	환경 3
		8급	4	행정 1, 환경 3
		9급	9	공업 3, 환경 6
환 경 관 리 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환경 1
		6급	3	환경 2, 행정·환경 1
		7급	4	환경 4
		8급	6	행정 1, 환경 5
		9급	7	환경 5, 행정·환경 2
생 태 하 천 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환경·시설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6급	7	행정 1, 공업 2, 시설 1, 운전 1, 보건·환경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7급	8	행정 1, 공업 1, 환경 2, 시설 4
		8급	2	보건 1, 시설 1
		9급	3	행정 1, 공업 1, 시설 1
안전 총괄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시설 1
		6급	7	행정 2, 행정·시설 2, 행정·방송통신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환경·시설 1
		7급	6	행정 2, 환경 1, 시설 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1
		8급	4	공업 1, 시설 1, 방송통신 2
		9급	4	행정 1, 시설 1, 방재안전 2
자원순환과	일반직	소계	29	
		5급	1	행정·보건·환경 1
		6급	7	행정 3, 행정·환경 2, 환경 1, 행정·보건·환경 1
		7급	9	행정 5, 보건 1, 환경 2, 행정·환경 1
		8급	7	행정 2, 환경 5
		9급	5	행정 4, 환경 1
위생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보건 1
		6급	6	보건 4, 행정·보건 2
		7급	9	보건 9
		8급	3	보건 2, 공업·보건 1
		9급	1	행정·보건 1
경제에너지과	일반직	소계	23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6	행정 3, 공업 1, 농업 1, 수의 1
		7급	11	행정 4, 공업 3, 농업 1, 수의 1, 해양수산 1, 농업·수의 1
		8급	3	행정 1, 농업 1, 시설 1
		9급	1	농업 1
기업지원과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공업 1
		6급	4	공업 2, 행정·공업 1, 행정·공업·시설 1
		7급	4	행정 1, 공업 1, 시설 1, 기계운영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8급	1	공업 1
		9급	3	행정 1, 공업 2
사회적경제 일자리과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4
		7급	3	행정 3
		8급	6	행정 6
		9급	1	행정 1
교통정책과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공업·시설 1
		6급	5	행정 3, 시설 1, 행정·공업 1
		7급	4	행정 3, 공업 1
		8급	5	행정 3, 공업 1, 시설 1
		9급	2	행정 2
주차관리과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3, 세무 1, 시설 1
		7급	3	행정 1, 시설 1, 사무운영 1
		8급	4	행정 4
차량민원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공업 1
		6급	4	행정 2, 행정·세무 2
		7급	6	행정 4, 세무 1, 공업 1
		8급	8	행정 7, 세무 1
		9급	3	행정 2, 공업 1
도시기반과	일반직	소계	26	
		4급	1	기술 1
		5급	1	행정·시설 1
		6급	7	행정 2, 공업 2, 시설 2, 행정·시설 1
		7급	6	행정 2, 공업 1, 시설 3
		8급	10	행정 1, 공업 1, 시설 6, 기계운영 1, 행정·시설 1
		9급	1	공업 1
건축과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시설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6급	5	행정 1, 시설 3, 환경·시설 1
		7급	5	시설 5
		8급	8	행정 1, 공업 2, 시설 5
		9급	8	행정 1, 시설 7
주 택 과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시설 1
		6급	4	시설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시설 1
		7급	5	사회복지 1, 시설 4
		8급	3	시설 2, 행정·시설 1
		9급	3	사회복지 1, 시설 2
도 시 개 발 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행정 1, 시설 2, 행정·시설 2, 녹지·시설 1
		7급	11	행정 3, 시설 8
		8급	5	행정 2, 시설 3
		9급	2	시설 2
도 시 재 생 경 관 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시설 1
		6급	7	행정 2, 시설 1, 사무운영 1, 행정·시설 3
		7급	6	행정 1, 시설 5
		8급	3	행정 2, 시설 1
		9급	4	행정 1, 시설 3
공 원 녹 지 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녹지·시설 1
		6급	6	녹지 5, 행정·녹지 1
		7급	7	녹지 7
		8급	5	녹지 5
		9급	3	녹지 3

[별표 3]

<b>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b>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20	
의회사무국	일반직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8	행정 4, 속기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4
		8급	4	행정 3, 운전 1
		9급	1	행정 1

[별표 4]

###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b>합 계</b>			<b>89</b>	
보건 행정 과	일반직	계	24	
		4급	1	기술 1
		5급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4	의료기술 2, 행정·보건·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8	보건 3, 의료기술 2, 간호 2, 운전 1
		8급	9	행정 2, 보건 2, 간호 1, 운전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9급	1	행정 1
건강 증진 과	일반직	계	14	
		5급	2	의무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6급	4	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7급	3	보건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8급	5	간호 3, 행정·간호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지역 보건 과	일반직	계	14	
		5급	2	의무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4	보건 1, 보건·간호 1, 행정·보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7급	2	의료기술 1, 간호 1
		8급	5	간호 4, 보건·간호 1
		9급	1	사회복지 1
치매 돌봄 과	일반직	계	20	
		5급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4	사회복지·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8급	12	사회복지 2, 간호 10
		9급	3	행정 2, 의료기술 1
건강 생활 지원 과	일반직	계	17	
		5급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6	행정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7급	6	보건 1, 의료기술 1, 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8급	3	의료기술 1, 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9급	1	보건 1

[별표 5]

### 출장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39	
검 단 출 장 소	일반직	5급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6급	11	행정 1, 세무 2, 녹지 1, 시설 2,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농업 1, 행정·보건 1, 행정·공업·시설 1
		7급	13	행정 2, 공업 2, 농업 1, 녹지 1, 보건 1, 시설 5, 행정·세무 1
		8급	9	녹지 1, 보건 2, 시설 5, 환경·공업 1
		9급	5	행정 2, 세무 1, 녹지 2

[별표 6]

##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중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b>합 계</b>			<b>284</b>	
검 암 경 서 동	일반직	<b>소계</b>	15	
		5급	1	행정 · 공업 · 농업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6	행정 5, 사회복지 1
		9급	2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연 희 동	일반직	<b>소계</b>	21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3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6	행정 2, 사회복지 3, 운전 1
		8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9급	7	행정 3, 사회복지 4
청 라 1 동	일반직	<b>소계</b>	13	
		5급	1	행정 · 보건 · 환경 1
		6급	2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3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청 라 2 동	일반직	<b>소계</b>	15	
		5급	1	행정 · 녹지 · 시설 1
		6급	2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환경 1
		7급	2	행정 2
		8급	6	행정 4,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청 라 3 동	일반직	<b>소계</b>	12	
		5급	1	행정 · 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무운영 1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가 정 1 동	일반직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보건 1
		7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8급	2	행정 1, 운전 1
가 정 2 동	일반직	9급	3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소계	10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2	행정·방송통신 1, 행정·사회복지 1
		7급	1	행정 1
		8급	4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가 정 3 동	일반직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소계	10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1	행정 1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신 현 원 창 동	일반직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1, 운전 1
		소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석 남 1 동	일반직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소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5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8급	2	행정 2
석 남 2 동	일반직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6급	2	행정·환경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4	행정 1, 사회복지 3
		9급	1	행정 1
석 남 3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2	행정·녹지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1	행정 1(행정복지)
가 좌 1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2	행정 1, 운전 1
		8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2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1, 사무운영 1
		8급	4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3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공업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4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검 단 동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6급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세무·농업 1
		7급	6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사회복지 1
		8급	2	행정 2
		9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불로대곡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6급	3	행정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4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행정·농업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원 당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보건·시설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운전 1
		8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9급	4	행정 1, 사회복지 3
당 하 동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6급	2	행정·세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오류왕길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2	행정·보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3
마 전 동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2	행정 2
		8급	3	행정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운전 1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43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4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검단신도시 AA4블록 유승한내들 신축
2. 사업주체 : (주)유승종합건설 (대표 민광옥)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4블록
  - 나. 대지면적 : 57,122㎡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53,836.2080㎡ (지하3층, 지상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938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346,520,492천원
4. 사업기간 : 2018. 10. 19. ~ 2021. 09. 18.

## 5. 변경사항

가. 층간 완충재 변경

나. 발코니 확장 부분 단열재 변경

다. 다용도실 단열재 추가 설치

라. 옥상 소화수조 위치 변경

마. 지붕 난간 변경

바. 저층부 마감재 변경

사. 조경 특화 변경

아. 주민운동시설 화장실 출입문 설치 및 출입문 넓힘 등

자. 어린이집 및 경로당 출입문 넓힘

차. 관리사무소, 작은 도서관 등 출입문 넓힘, 창호 및 경사로 변경 등

카. 오기 및 누락사항 반영 등

##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0-4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80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03.0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3-0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06-6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180 (백석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0 (식물단지 3가구 3획지)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34-2 (급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두 번째 분기되는 도로	주석회사거성무드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79-5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108번길 25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61-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13번안길 30 (오류동)	20090922	오류로1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61-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13번안길 42-6 (오류동)	20090922	오류로1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60-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13번안길 34 (오류동)	20090922	오류로1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60-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13번안길 42 (오류동)	20090922	오류로1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상동 393-160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207번길 75 (원상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고시일 : 2020-03-0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석남동 223-45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18번길 7 (석남동)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18번길 7 (석남동)	소유자 신청	2020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남동 223-895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18번길 5 (석남동)		2020092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3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공용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 구매·임차비율 준수 내용 신설
- 나.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 내용 개정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용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 구매·임차비율 준수 내용 신설
- 나. 공용차량 교체 기준을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부합하도록 개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32-560-4162 (FAX 560-2720)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이유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공용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 구매·임차비율 준수 내용 신설
- 나.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 내용 개정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용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 구매·임차비율 준수 내용 신설
- 나. 공용차량 교체 기준을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부합하도록 개정

###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조기에”를 “일찍”으로 한다.

7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

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6조 중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기준”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차량 총괄부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준수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임차차량의 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적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임차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차량정수는 구청장이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기관별 기능과 업무량, 조직규모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초과”를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넘은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중 “소요예산”을 “필요한 예산”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사유없이”을 “사유 없이”으로 한다.

제20조 중 “카드제”를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으로, “유류지급”을 “유류구매량”으로, “잔고량을”을 “잔량을”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수수하는”을 “주거나 받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운전중”을 “운전 중”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등에 정통하여”를 “이상 등을 확인하고”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u>총 칙</u>	제1장 <u>총칙</u>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7의2. “임차차량” 이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u>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u>조기에</u>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 ----- ----- <u>일찍</u> ----- ----- -----.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u>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u> 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 --- <u>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기준</u> ----- -----.
제7조(배정요청) (생   략)	제7조(배정요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차량 총괄부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준수한다.

<신 설>

제7조의2(임차차량의 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적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임차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배정·교체승인 협의)

제12조(정수배정·교체승인 협의)

① 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구청장이 별표 2

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이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

2.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파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문신설 2012.1.1 2.]

<신 설>

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기관별 기능과 업무량, 조직규모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한다.

② -----  
-----  
-----.

1. -----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

2. 최초 등록된 날부터 10년이 넘은 경우

<삭 제>

<삭 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금지) 기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금지) --

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차량관리방법) ① ~ ③ (생략)

④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된다.

⑤ (생략)

제20조(유류구입 등)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1조(유류사용 정산) ① (생략)

②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  
----- 필요한 예산----- 미리 -----.

제17조(차량관리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사유 없이-----.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유류구입 등) -----  
-----  
-----  
-----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

제21조(유류사용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행거리와 유류잔량-----  
----- 유류구매량 ----- 잔량을 -----

야 한다.

제25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 3.·4. (생략)
-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 6.·7. (생략)
-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 10. ~ 13. (생략)

제26조(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 ① (생략)
- 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제25조(금지사항) -----

-----

--.

- 1. (현행과 같음)
- 2. ----- 휴대전화 -----
- 3.·4. (현행과 같음)
- 5. 다른 사람-----
- 6.·7. (현행과 같음)
- 8. ----- 주거나 받는 -----
- 9. 운전 중-----
- 10. ~ 13. (현행과 같음)

제26조(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이상 등을 확인하고 -----
- .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 기준**(제6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차 량 관 리 · 운 행 기 준
승 용 (전 용)	대형	· 구청장 · 부구청장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대형	· 구의회 의장	
승 용 (업무용)	중형 · 소형 · 경형	· 구본청, 구산하기관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 · 중형 · 소형	· 구본청, 구산하기관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

##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8조 관련)

##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및 쉼형, 다목적 승용차 및 전기자동차(승용)	경승용차
구 본 청	27대	2대 (구청장· 부구청장 전용)	1대	32대	업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 대수 배정
구 의회사무국	2대	1대 (의장전용)		1대	
보 건 소	3대			3대	
출 장 소	2대			2대	
동 행정복지센터	1대			1대	

##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가.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직속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의정활동 지원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단속용	주차관리단속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동행정복지센터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그밖의 사업용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가.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행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나.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그 밖의 사업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 〈관계법령 발췌〉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3. 31., 2016. 11. 17., 2018. 6. 14., 2019. 7. 1.>

1. 2018년 6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50
2.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70
3. 2020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은 별표 6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 6. 14.>

### -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7조(차량의 교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별표] &lt;개정 2011.8.3.&gt; : 공용차량 관리 규정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영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영 기준
승용 (전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각 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 장관급 공무원 ○ 각 부의 차관 ○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 차관급 공무원(「차관회의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 항에 따라 차관회의에 상 시 배석하는 공무원을 포함 한다)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 품관리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라 조달청 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 (업무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각급 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 품관리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라 조달청 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각급 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 품관리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라 조달청 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각급 행정기관이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